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62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이인선·박충권·이종배
김성원·고동진·안철수
서지영·유용원·박수영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를 받은 후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해당 아동의 사망 위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정 이후의 소재·안전 확인도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혐의자와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

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 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 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신 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와 분리된 상 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